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7. 23(월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• 과장 이유리, 사무관 정재형, 주무관 안정석 • ☎ (044) 201-4284, 4311, 429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‘ 국토부 “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” ....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

-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(17.9)해 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허가 요건 및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\*하였으나,
  - \* 허가요건(허가→신고), 동의요건(입주민의 2/3이상 → 입주자대표회의 동의)
- 산업부·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하면서, 지자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(철거 등)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,
  -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·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전자신문 7.22) >

- ◆ 국토부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원상복구(철거)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.
-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“공동주택관리법”에 의해 “증축”신고에 해당하며,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지침 시달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정재형사무관(☎ 044-201-33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